

2022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

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. 보상대상 :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지역주민

☞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(전출·사망자 포함)

2. 소음대책지역 : 예천읍, 호명면, 유천면, 용궁면, 개포면 일부지역

☞ 보상대상 조회 :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(kmnoise.samwoanc.com)/크롬 접속 권장

3. 신청자 : 본인 직접 신청

☞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가능

☞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

4. 신청기간 : 2022. 2. 3.(목) ~ 2. 28.(월) 09:00 ~ 18:00

※ 접수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신청기간 내 신청가능(단, 지연이자 없음)

5. 신청방법 :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지정 접수처 방문접수(붙임 참조)

※ 단, 해당마을 접수기간에 미신청자는 2월 23일 ~ 2월 28일 예천군청 접수

6. 지급방법 : 본인명의 계좌 입금(8월 말)

7. 지급기준

구 분	제1종	제2종	제3종	비고
소음기준(웨클)	95 이상	90 이상 95 미만	85 이상 90 미만	규정에 따라 감액
1인당 보상금액	월 6만원	월 4만 5천원	월 3만원	

※ 해당연도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연 1회 지급

8. 감액규정

구 분	감 액 조 건	감 액 률
전입 시기	가. 1989. 1. 1. ~ 2010. 12. 31. 기간 중 전입자	30% 감액
	나. 2011. 01. 01. 이후 전입자	50% 감액
	다. 나)에 경우에도 2010. 1. 1. ~ 2010. 12. 31 기간 거주자가 소음대책지역 외 지역으로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로 재전입 시	30% 감액

구 분	감 액 조 건	감 액 률
근무지·사업장	가.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,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이내	30% 감액
	나.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, 군용비행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100Km 초과	미지급 (100%감액)
실제 거주일	현역병(의무경찰대원,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)복무 기간,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,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,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	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
감액하지 않는 경우	가. 1989.1.1. 이전 거주자가 대책지역 외 전출 뒤 1년 내 종전 거주지 재전입 나.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다. 전입당시 미성년자(출생자) 라.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 전입	

9. 구비서류

구 분	구비서류	
공통 서류 (필수)	■ 보상금 지급신청서 (행정정보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) ■ 본인 신분증 ■ 본인 명의 통장사본	■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내용 (※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) ① 주민등록등본 ②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포함)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 ⑤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⑥ 병적증명서
해당할 경우	■ 세대 대표자 선정서 -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, 통장사본	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
	■ 보상금 신청 위임장	※ 아래 사유로 위임하는 경우 - 이민 증 국외체류 : 재외공관 장 - 입원 : 의료기관 장 - 교도소 수용 : 수용기관 장 -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: 읍면동장
	■ 재직증명서	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
	■ 피상속인 제적 등본	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
	■ 주민등록말소자 초본,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,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피상속인 제적등본	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
	■ 혼인관계증명서	혼인으로 전입한 경우
	■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사실증명서	외국인의 경우